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2025. 12. 2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한 뒤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당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이하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함.

참사 발생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사고조사에 착수하면서 정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은 여전히 불투명함. 또한 사조위 조사 과정에 대한 진실 축소·은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가. 12.29 여객기 참사의 실제적 원인과 책임 규명

나.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 평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다. 항공기의 엔진 등 기체 결함이 12.29 여객기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12.29 여객기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마.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바.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포함)
 -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한국공항공사
 -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타 기관
 - 제주항공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 2025. 12. 22. ~ 2026. 1. 30. (40일)

가. 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현장조사 :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청문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 수 : 18인

나. 위원 배분 : 9인(더불어민주당) : 7인(국민의힘) : 2인(비교섭단체)

다. 구성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	더불어민주당 (9)	염 태 영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상 욱 김 성 회 이 광 희 이 연 희 전 진 숙 정 준 호	(간사)
	국민의힘 (7)	이 양 수 김 은 혜 김 미 애 서 천 호 이 달 희 이 성 권 정 성 국	(위원장) (간사)
	비교섭단체 (2)	윤 중 오 최 혁 진	

라. 직 원 : 22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토교통위원회 (21인)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박 재 유	
	전문위원(이사관)	임 종 수	
	입법심의관(부이사관)	남궁인철	
	행정실장(부이사관)	정 종 선	
	입법조사관(서기관)	김 미 량	
	입법조사관(서기관)	이 재 명	
	입법조사관(서기관)	권 용 훈	
	입법조사관(서기관)	최 은 제	
	입법조사관(서기관)	김 은 표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문 정 원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최 영 표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유 립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류 지 호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해 언	
	입법조사관(행정주사)	김 해 성	
	주무관(행정주사)	최 윤 희	
	주무관(행정주사)	박 은 영	
	주무관(행정주사)	정 현 주	
	주무관(사무주사)	강 은 숙	
	주무관(사무주사보)	김 정 화	
	행정관(행정주사보)	박 정 우	
국회사무처(1인)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조 재 현	

7. 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